

『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
 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
 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- 예산조치 : '16년도 예산에 5,000만 원이 반영됨.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,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4조의2에서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제17조 신설 2014.5.28, 시행 2015.1.1)에 따라 조례 제4조에서 명시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▪ 본 개정조례안은

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제17조 신설 2014.5.28, 시행 2015.1.1)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조례 제4조에서 명시한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